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확인서 (육아휴직 /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)

※ 해당칸에 작성 및 체크✓해주세요

1. 대상자 정보(육아휴직/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자) <input type="radio"/> 사업장명: <input type="radio"/> 근로자성명: (생년월일:) <input type="radio"/> 육아휴직 (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) 부여기간: 20 . . . ~ 20 . . . <input type="radio"/> 복직일 (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종료일): 20 . . . <input type="radio"/> 대체인력인건비 신청(예정)여부: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※대체인력인건비는 육아휴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영아(12개월미만)특례지원금 중복 불가	
2. 상기 대상자는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에 해당됩니까?(“예”해당시,지원금 제외 대상으로 장려금 부지급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3. 상기 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(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)을 부여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4. 육아휴직 종료(육아기근로시간 단축)된 경우, 상기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계획이 있습니까?(또는 육아휴직 종료나 육아기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였습니까?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5. 귀 사업장은 국가,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해당합니까? 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 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은 지원 제외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6. 귀 사업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합니까? (육아휴직 개시일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시일 이전) ※ 귀 사업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예산을 지원받는 경우, 간접노무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※ 일부라도 자체수익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증빙서류 필수제출요망(예산서등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
상기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, 사업장 대표 또는 대리인(업무담당자)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.
 만약 상기 질문에 허위로 답변한 경우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해당되며,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는 물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각종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사업장명 : (직인)

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관련사항 안내 확인서

1.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(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)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·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·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·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, 이미 지급된 지원금·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함.
-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내용은 『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·장려금 부정수급방지 업무처리규정, 예규 제480호, 이하 "업무처리규정"이라 한다』제3조 규정에 의한 "별표"에 따름

《※별표 :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사례》

1.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한 지원금·장려금을 신청
 - ①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·취득·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한 장려금의 지급
 -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·장려금 지급
2.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·제출
 - ① 매출액, 재고량, 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허위 제출
 - ② 휴업, 근로시간단축, 훈련 등의 실시,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등의 허위신고
 - ③ 출·퇴근부, 훈련실시현황의 허위작성 및 신고
 - ④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신고
 - ⑤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허위 기재
 - ⑥ 훈련비 등 비용정산서류의 위조 및 허위작성
3. 기타 :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2. 지급제한기간 설정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·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·장려금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지원금·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.(동법시행령 제56조의2)

3. 추가징수

-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.(동법 제35조의2)
-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.(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2)

4.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의 납부

-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(동법시행령 제56조의3)
-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·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.(동법시행령 제56조의4)

5. 부정수급액 등의 체납처분

-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액,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, 추가징수액에 대하여는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.(동법 제106조)

6. 형법에 따른 처벌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형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.(형법 제137조 및 제347조 등)

위와 같이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함.

20 년 월 일

사업장명 :

(직인)